#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해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738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0.

발 의 자:이해민·조 국·차규근

김준형 • 신장식 • 김선민

조인철 · 강경숙 · 서왕진

황운하 • 정춘생 • 김재원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정당이 당내경선 등을 실시하거나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를 하는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일정한 수의 휴대전화가상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이동통신사업자가 보유한 고객의 주소 정보는 청구서 발송 등을 위하여 수집한 것으로, 고객의 실제「주민등록법」상의 주소와는 다른 경우가 많아 당내경선 및 여론 조사에 사용되는 휴대전화 가상 번호의 신뢰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,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인명부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 대상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그명단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고, 이동통신사업자는 그 대상자에대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도록 함으로써, 휴대전화 가상번호

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57조의8제5항 및 제108조의2제5항 신설 등).

##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7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해당 요청서를"을 "해당 요청서 와 제5항에 따른 당내경선등용 휴대전화 가상번호 대상자 명단을"로 하고.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 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본문 중 "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"를 "휴대전화 가상번 호 제공 요청서 및 당내경선등용 휴대전화 가상번호 대상자 명단"으 로 하고. 같은 조 제8항(종전의 제7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5항"을 "제6항"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10항(종전의 제8항) 중 "제5항"을 "제6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1항 (종전의 제9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5항 본문 또는 제8항"을 "제6 항 본문 또는 제10항"으로 하고. 같은 조 제13항(종전의 제11항) 전단 중 "제5항"을 "제6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5항(종전의 제13항) 중 "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 서식"을 "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 청서 서식, 휴대전화 가상번호 대상자 무작위 선정 및 명단 작성"으로 한다.

- 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전 선거의 통합선거인명부 또는 선거 인명부를 이용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정당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성 별·연령별·지역별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만큼 경선선거인 또는 여 론수렴 대상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그 대상자 명단(이하 "당내경선 등용 휴대전화 가상번호 대상자 명단"이라 한다)을 작성하여야 한 다.
- ⑨ 이동통신사업자(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)는 당내경선등 용 휴대전화 가상번호 대상자 명단을 어느 누구에게도 제공하여서 는 아니 된다.

제108조의2제3항 중 "해당 요청서를"을 "해당 요청서와 제5항에 따른 선거여론조사용 휴대전화 가상번호 대상자 명단을"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"제57조의8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"을 "제57조의8제4항부터 제13항까지(제5항 및 제10항은 제외한다)의 규정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 중 "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 서식"을 "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 서식"을 "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 서식, 휴대전화 가상번호 대상자 무작위 선정 및 명단 작성"으로 한다.

⑤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직전 선거의 통합선거인명부 또는 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선거여론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성별·연령별·지역별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만큼

여론조사 대상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그 대상자 명단(이하 "선거여 론조사용 휴대전화 가상번호 대상자 명단"이라 한다)을 작성하여야 한다.

제256조제1항제1호 중 "제57조의8제7항제3호(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"를 "제57조의8제8항제3호(제108조의2제6항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"로, "제4호(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)"를 "제4호(제108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"로, "제5호(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)"를 "제5호(제108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"로, "제6호(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"를 "제6호(제 108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"로 하고. 같은 항에 제 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. 같은 항 제2호 중 "제57조의8제9항제 1호(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"를 "제57조의8제 11항제1호(제108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"로, "제57 조의8제9항제2호(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"를 "제57조의8제11항제2호(제108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)"로 하고. 같은 항 제3호 중 "제57조의8제10항(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"을 "제57조의8제12항(제108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제1호하목 중 "제57조의8제7항제1호(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)"를 "제57조의8제8항제1호(제108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

포함한다)"로, "제2호(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"를 "제2호(제108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"로 한다.

1의2. 제57조의8제9항(제108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여 당내경선등용 휴대전화 가상번호 대상자 명단을 제공한 자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휴대전화 가상번호 대상자 무작위 선정 및 대상자 명단 작성에 관한 적용례) 제57조의8제5항 및 제108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정당 또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57조의8(당내경선 등을 위한 제57조의8(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) ①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) ① (생 략) (현행과 같음) ② 정당은 다음 각 호의 기간 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 서를 제출하여야 하고, 관할 선 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요청서의 기재사항을 심사한 후 제출받 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요 -----해당 요청 청서를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송 서와 제5항에 따른 당내경선등 부하여야 한다. 용 휴대전화 가상번호 대상자 명단을-----1. • 2. (생 략) 1. • 2. (현행과 같음) ③ · ④ (생 략) ③ • ④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직 전 선거의 통합선거인명부 또 는 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이 동통신사업자가 정당에게 제공 하여야 하는 성별 · 연령별 · 지 역별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만 큼 경선선거인 또는 여론수렴 ⑤ 이동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 청서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 호를 생성하여 유효기간을 설 정한 다음 관할 선거관리위원 회를 경유하여 해당 정당에 제 공하여야 한다. 다만, 이동통신 사업자는 이용자 수의 부족 등 으로 제공할 수 있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가 제공하여야 하 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 보다 적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,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휴 대전화 가상번호 수를 조정할 수 있다.

대상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
그 대상자 명단(이하 "당내경
선등용 휴대전화 가상번호 대
상자 명단"이라 한다)을 작성
하여야 한다.
<u>⑥</u>
-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
서 및 당내경선등용 휴대전화
가상번호 대상자 명단

- ⑥ (생략)
- ① 이동통신사업자(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)가 제5 할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 를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1. ~ 6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- ⑧ 정당은 <u>제5항</u>에 따라 제공 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1 항에 따른 여론조사를 실시하 거나 여론수렴을 하기 위하여 여론조사 기관·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.
- ⑨ 제5항 본문 또는 제8항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 공받은 정당(그 대표자 및 구 성원을 포함한다) 또는 여론조 사 기관·단체(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)는 다음 각

· <u>⑦</u> (현행 제6항과 같음) ⑧
<u> </u>
1. ~ 6. (현행과 같음)
⑨ 이동통신사업자(그 대표자
및 구성원을 포함한다)는 당내
경선등용 휴대전화 가상번호
대상자 명단을 어느 누구에게
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<u>⑩</u> <u>제6항</u>
⑪ 제6항 본문 또는 제10항
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· 2. (생략)

① (생략)

① 이동통신사업자가 제5항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을 요청한 해당 정당이 부담한다. 이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생성 ·제공에 소요되는 최소한의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.

① (생략)

①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 방법과 절차, 휴대전화 가상 번호의 유효기간 설정,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 서식, 관할 선거관리위원회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.

제108조의2(선거여론조사를 위한 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) ① · ② (생 략)
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◎ (현행 제10항과 같음)
<u> ③</u> <u>제6항</u>
· ④ (현행 제12항과 같음)
(b)
<u> </u>
휴대전
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 서식,
휴대전화 가상번호 대상자 무
작위 선정 및 명단 작성
<u>.</u>
∥108조의2(선거여론조사를 위한

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) ①

• ② (현행과 같음)

③ 제2항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은 해당 여론조사 개시일 전 10일까지 관할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,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해당 요청서의 기재사항을 심사한 후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요청서를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④ (생 략) <신 설>

3
<u>해당</u>
요청서와 제5항에 따른 선거여
론조사용 휴대전화 가상번호
대상자 명단을

- ④ (현행과 같음)
- ⑤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 회는 직전 선거의 통합선거인 명부 또는 선거인명부를 이용 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선거여 론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하 는 성별·연령별·지역별 휴대 전화 가상번호 수만큼 여론조 사 대상자를 무작위로 선정하 여 그 대상자 명단(이하 "선거 여론조사용 휴대전화 가상번호 대상자 명단"이라 한다)을 작

- 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에 관하여는 제57조의8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⑥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 방법과 절차, 휴대전화 가상 번호의 유효기간 설정, 휴대전 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 서식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.
- 제256조(각종제한규정위반죄) ①
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
  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
 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
  처한다.
  - 1. 제57조의8제7항제3호(제108 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한 자, 같은 항 제4호(제108조의2제5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)를 위반하여 해당 정당

<u>성하여야 한다.</u>
<u>⑥</u>
제57조의8제4항부터
제13항까지(제5항 및 제10항은
<u>제외한다)의 규정</u>
<u>⑦</u>
휴대전
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 서식,
휴대전화 가상번호 대상자 무
작위 선정 및 명단 작성
<u>,</u>
제256조(각종제한규정위반죄) ①
1. 제57조의8제8항제3호(제108
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
<u> 우를 포함한다)</u>
<u>제4호(제108조의2제6항</u>
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
<u>다)</u>

또는 선거여론조사기관 외의 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자, 같은 항 제5호(제 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여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이용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자 또는 같은 항 제6호(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제공한 자 <신 설>

2. 제57조의8제9항제1호(제108 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57조 의8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ㆍ 여론수렴 또는 제108조의2제1 항에 따른 여론조사가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57조 의8제9항제2호(제108조의2제5

<u>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</u> <u>한다)</u>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 게 제공한 자

- 3. 제57조의8제10항(제108조의2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유효기 간이 지난 휴대전화 가상번호 를 즉시 폐기하지 아니한 자 4.·5. (생 략)
- ② (생략)
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 役 또는 400萬원 이하의 罰金 에 處한다.
- 選擧運動과 관련하여 다음
 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

가. ~ 파. (생 략)

하. 제57조의8제7항제1호(제1 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지아니하고 제공하거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날부터 당내경선의 선거일

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
다)
3. 제57조의8제12항(제108조의2
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
<u> 포함한다)</u>
4. • 5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3
<u>.</u>
1
1.
가. ~ 파. (현행과 같음)
하. <u>제57조의8제8항제1호(제1</u>
08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
는 경우를 포함한다)

까지의 기간, 여론수렴 기간을 또는 여론조사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공한 자 또는 같은 항 제2호(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여 요청 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를 초과하여 휴대전화가상번호를 제공한 자

거. • 너. (생 략)

2. ~ 4. (생략)

④·⑤(생략)

저	2호(제108	조의2제(	<u>6항</u>
21 . 1	7 6 -11	-1 4 -7	_
<u>에서</u>	준용하는	경우들	<u> </u>
おおれ	7)		
임인	<u>1)</u>		

거.ㆍ너. (현행과 같음)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④ · ⑤ (현행과 같음)